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09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 : 이탄희 · 최혜영 · 아뉴진비

양이원영 · 민형배 · 박광온

박용진 • 박주민 • 홍정민

윤미향 · 김영배 · 정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 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는 동 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 하 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다른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 동물병원 또는 축사 등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제23조의2 및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이 경우 동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축산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
-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부터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대통령 이 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한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이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3. 「축산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

제46조(벌칙) ① ~ ③ (생 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 략) <신 설>
- 6. (생략)
- ⑤ (생략)

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실
 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6.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